

광주지방법원 2024. 5. 30 선고 2023가단8384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4. 4. 25.

판 결 선 고 2024. 5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2023. 3. 28.부터 위 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

판사 윤봉학

별지